홍은2-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주택사업특별회계
사업기간	☑연례반복
사업내용	○ 우리시 홍은 2-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서대문구청에 정비기반시설(도로 및 녹지) 설치비용을 보조 하고자 함
사업비 (당해년도)	619,000천원 〔국비〕 〔시비〕619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145,750천원 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본부	재생협력과	진경식 2133-7190	진경은 2133-7186	신광현 2133-7187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-) 619,000	(x-) 619,000	(x-) 0
자치단체자본보조	(x-) 0	(x-) 619,000	(x-) 619,00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
자치단체자본보조	○ 정비기반 설치비용 619,000,000원 = 619,0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

3 사 업 설 명

□ **사업목적**

○ 우리시 홍은 2-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서대문구청에 정비기반시설(도로 및 녹지) 설치비용을 보조하고자 함.

○ 동 구역 2018.10월 건축물 준공 예정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연시 건축물준공, 입주민 민원등이 예상되는 등 내년도에 반드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함.

□ **사업근거**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1항 (보조 및 융자)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1항 및 3항 (보조 및 융자등)

□ **사업내용**

○ 사업기간 : 2018.01~12

○ 지원대상 : 도로 및 경관녹지 설치 비용보조

○ 사업수행주체 : 서대문 구청장

○ 추진방법 :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시행
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홍은2-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

□ **추진경위**

○ 2005.05.19 : 정비구역 지정고시(서고시 제145)

○ 2007.11.07 : 도로공사 착공

○ 2008.03.13 : 도시계획사업부지내 보상실시

○ 2008.05.19 : 국공유지 매각 계약

○ 2011.06.30 : 어린이공원 준공

○ 2011.07.30 : 청소년수련원 준공

○ 2015.04.30 : 정비계획 변경 고시(획지변경 23 → 9)

○ 2015.07.00 : A1, A2, A3, B1, B2, B3획지 건축허가

○ 2016.12.31 : 도로개설 공사 일부 완료 (소로2-4, 2-5, 2-6)

○ 현재 : 도로개설 72% 완료, 대지조성공사 중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19,000	
공사계약 및 공사시행	2018.01~2018.12	619,000	3월까지 공사계약 체결, 10월 전 공사완료 추진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○ 홍은2-2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기반시설(도로) 설치
2016년도	
2017년도	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 주거지역에 대하여 열악한 공공시설 정비 및 주택 개량 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